

에셋플러스 해피드림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펀드코드 : AD857]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KOSPI200 선물을 매도**하는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를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에셋플러스 해피드림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주식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KOSPI200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에셋플러스 해피드림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KOSPI200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즉, KOSPI200 업종별 시총비중을 고려하여 일등기업 중심으로 주식을 매수(롱)하고, KOSPI200 선물을 매도(숏)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해지 비중 조절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일등기업 주식 포트폴리오 활용 전략(주식투자 비율: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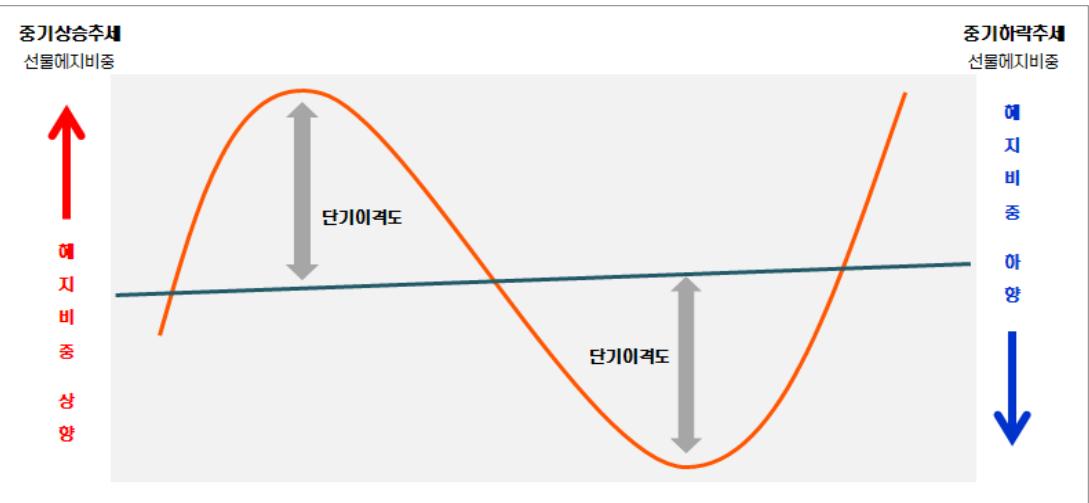
시장지수 변동과 고리를 줄이기 위해 업종이나 기업별로 시장 비중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등기업을 중심으로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구조적 경쟁력을 가진 일등기업 주식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지수(KOSPI200)를 웃도는 수익률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일등기업 중심으로 주식을 매수(롱)하고, 주식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KOSPI200 선물을 매도(숏)하여 주식시장 변동에 대한 중립포지션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일등기업”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내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2) 시장 불균형 활용 전략(선물 헤지비중 조절 전략)

이동평균가격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가격은 결국 이동평균에 수렴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해지 비중 조절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이 지나친 흥분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실질주식비중을 줄이고 지나친 공포일 때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내 주가수준 차이(보통주/우선주), 산업 내 저평가/고평가 등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	<p>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추가납입 가능)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 이내	1.2420	0.6000	1.1200	1.2441	226	356	490	775	1,58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1.5920	0.9500	1.4200	1.5943	163	332	507	874	1,905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0.9420	0.3000	0.9000	0.9441	146	246	350	570	1,20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1.1120	0.4700	1.0300	1.1141	114	233	356	617	1,36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C-P)	-	1.3720	0.7300	-	1.3720	141	286	437	756	1,65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C-P2)	-	1.3620	0.7200	-	1.3620	140	284	434	750	1,64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e)	-	0.9220	0.2800	-	0.9231	95	193	296	513	1,13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2e)	-	0.9920	0.3500	-	0.9938	102	208	318	552	1,222
<p>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수수료선취-온라인(Ae)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율을 의미합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근 1년 ('20.11.29 ~ 21.11.28)	최근 2년 ('19.11.29.~'21.11.28.)		최근 3년 ('18.11.29.~'21.11.28.)	최근 5년 ('16.11.29.~'21.11.28.)	설정일 이후 ('12.11.29~'21.11.28)				
	집합투자기구	12.28	8.63		5.27	4.23	3.72				
	참고지수	1.06	1.57		1.63	1.59	1.87				
	수익률 변동성(%)	3.60	7.81		6.74	5.79	5.12				
	<p>주 1) '참고지수 = KOSPI200I×5% + CALL×95%'이며,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폭이 커서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태훈	1987	책임	13 개	4,322 억원	12.46	8.72	12.46	8.72	4 년 6 개월								
<p>주 1)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원본손실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격변동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혼합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리변동위험</td><td>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목선정위험</td><td>종목선정을 통한 주식투자 및 주로 주가지수선물 매도를 통해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하지만, 시장대비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상승 시 더 적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익 확보가 어렵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td></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혼합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선정위험	종목선정을 통한 주식투자 및 주로 주가지수선물 매도를 통해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하지만, 시장대비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상승 시 더 적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익 확보가 어렵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혼합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선정위험	종목선정을 통한 주식투자 및 주로 주가지수선물 매도를 통해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하지만, 시장대비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상승 시 더 적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익 확보가 어렵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입 방법	1)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 적용 2) 15 시 30 분 이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환매방법	<p>1)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2) 15 시 30 분 이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p>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p>·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p>																	
과세	<p>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주 요 내 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과세]</p>										구 분	주 요 내 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대표번호 : 02-1544-787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assetplus.co.kr)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효력발생일	2021년 12월 29일	준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 colspan="2">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 rowspan="2">판매경로</td> <td>온라인(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온라인 슈퍼(S)</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랩(W)</td> <td>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보유한 투자자</td> </tr> <tr> <td>고액(I)</td> <td>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td> </tr> <tr> <td>기관(F)</td> <td>투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td> </tr> <tr> <td>고액(S-I)</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td> </tr> <tr> <td>무권유저비용 (Ag)</td> <td>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td> </tr> <tr> <td>무권유저비용 (Cg)</td> <td>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td> </tr> <tr> <td>개인연금(C-P)</td> <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td> </tr> <tr> <td>퇴직연금(C-P2)</td> <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td> </tr> <tr> <td>개인연금(C-Pe)</td> <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On-Line 가입자)</td> </tr> <tr> <td>퇴직연금(C-P2e)</td> <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On-Line 가입자)</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랩(W)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보유한 투자자	고액(I)	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	기관(F)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	고액(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	무권유저비용 (Ag)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무권유저비용 (Cg)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On-Line 가입자)	퇴직연금(C-P2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랩(W)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을 보유한 투자자																																				
고액(I)	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																																				
기관(F)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인 경우																																				
고액(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투자금액이 50 억원이상인 투자자																																				
무권유저비용 (Ag)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무권유저비용 (Cg)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인 경우 (On-Line 가입자)																																				
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On-Line 가입자)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